◉김해시 고시 제2020-356호

김해 덕암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김해 덕암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김 해 시 장

1. 산업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

○ 관리기관 : 김해시(김해시 김해대로 2401)

○ 산업단지 위치

구 분	소 재 지	면 적 (㎡)
산업단지	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65-1 일원	42,385

나. 조성목적

○ 김해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

○ 인접한 덕암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촌면 일원의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

○ 중소기업 입지확대를 위한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

다. 추진경위

○ 2010. 01. 13. : 일반산업단지계획(안) 승인 신청

○ 2013. 07. 23. :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심의

○ 2013. 09. 26. :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(김해시 고시 제2013-171호)

○ 2015. 03. 26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5-53호) : 시행자 변경

○ 2015. 07. 30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5-127호) : 사업기간 변경

○ 2015. 09. 03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5-147호) : 시행자, 수용조서 변경

○ 2016. 01. 28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6-23호) : 사업기간 변경

○ 2016. 12. 28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6-343호) : 사업기간 변경

○ 2017. 12. 28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7-328호) : 사업기간 변경

○ 2018. 12. 20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8-319호) : 사업기간 변경

○ 2019. 12. 13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(김해시 고시 제2019-330호) : 사업기간 변경

라. 분양현황 및 계획

구분	총면적(㎡)	분양 가능 면적(㎡)					조성 기간	조성 기관
		분양	미분양			계		
			조성	조성중	소계			
합 계	42,385	-	-	42,385	42,385	42,385	-	주식회사 일림
산업시설구역	22,102	-	-	22,102	22,102	22,102	2013. 9.26. ~ 2020. 12.31.	
지원시설구역	-	-	-	-	-	-		
공공시설구역	15,867	-	-	15,867	15,867	15,867		
녹지구역	4,416	-	-	4,416	4,416	4,416		

마. 입주계획

구분	업체수		면적(㎡)		비고
	산업시설	기타	산업시설	기타(지원시설)	
합계	1	-	22,102	-	

바. 입지여건

시설명	'20. 11월 현재	확충계획		
		일정	규모	시행기관
도로	◦국도14호선(덕암교차로) ◦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(5.4km)	-	-	-
철도	◦진영역(5.5km), 장유역(5.5km) 입지	-	-	-
항공	◦김해국제공항(15km 내외)	-	-	-
용·오수	◦상수도 현황 -명동정수장 계통 기존 상수관로에서 인입계획 (계획용수 89㎥/일) ◦하수도 현황 -장유하수처리장으로 처리계획(계획오·폐수 43㎥/일)	-	-	-
전력	◦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	-	-	-
통신	◦㈜KT 공급계획	-	-	-
기타		-	-	-

2. 관리기본방향

○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
○ 합리적 업종배치,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
○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·운영

3. 관리기본계획

가.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

1) 용도별 구획면적

구 분	합 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면적(㎡)	42,385	22,102	-	15,867	4,416
구성비(%)	100.0	52.1	-	37.5	10.4

※ 세부시설내역
-산업시설구역 : 22,102㎡(산업시설용지)
-지원시설구역 : - ㎡(지원시설용지)
-공공시설구역 : 15,867㎡(도로 13,080㎡, 주차장 1,811㎡, 저류시설 976㎡)
-녹 지 구 역 : 4,416㎡(공원 4,416㎡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가) 산업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

※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

나) 공공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 및 부대시설

다) 녹지구역

(1)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3) 용도별구역 평면도: 별첨 1

나. 입주관리계획

1) 입주대상업종

가) 산업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제조업(C24)

2) 입주자격

가) 산업시설구역

(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3) 입주우선순위

○ 우선공급 : 사업시행자

○ 일반공급 :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실수요자

4) 입주제한

(1)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제외

다. 업종별 배치계획

1) 배치계획

업 종	면 적(㎡)	구성비(%)
1차금속제조업	22,102	100.0

2) 배치기준

(1)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
(2)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배치

3)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별첨 2

라.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에 따라 관리

1)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

(1) 「산업집적법 시행규칙」 제39조의3(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) 제2항의"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"과 관련하여 「산업집적법」 제15조 각 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(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)의 최소 분할면적은 1,650㎡ 이상으로 함.

2) 환경관리

(1)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(2)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부득이 산업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함

3) 안전관리

(1) 풍수해, 안전사고 등 재해·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·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
(2)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4) 기반시설관리

(1) 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, 통신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※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에 따름

별 첨

1. 용도별구역 평면도
2. 업종별 배치계획도

[별첨 1] 용도별구역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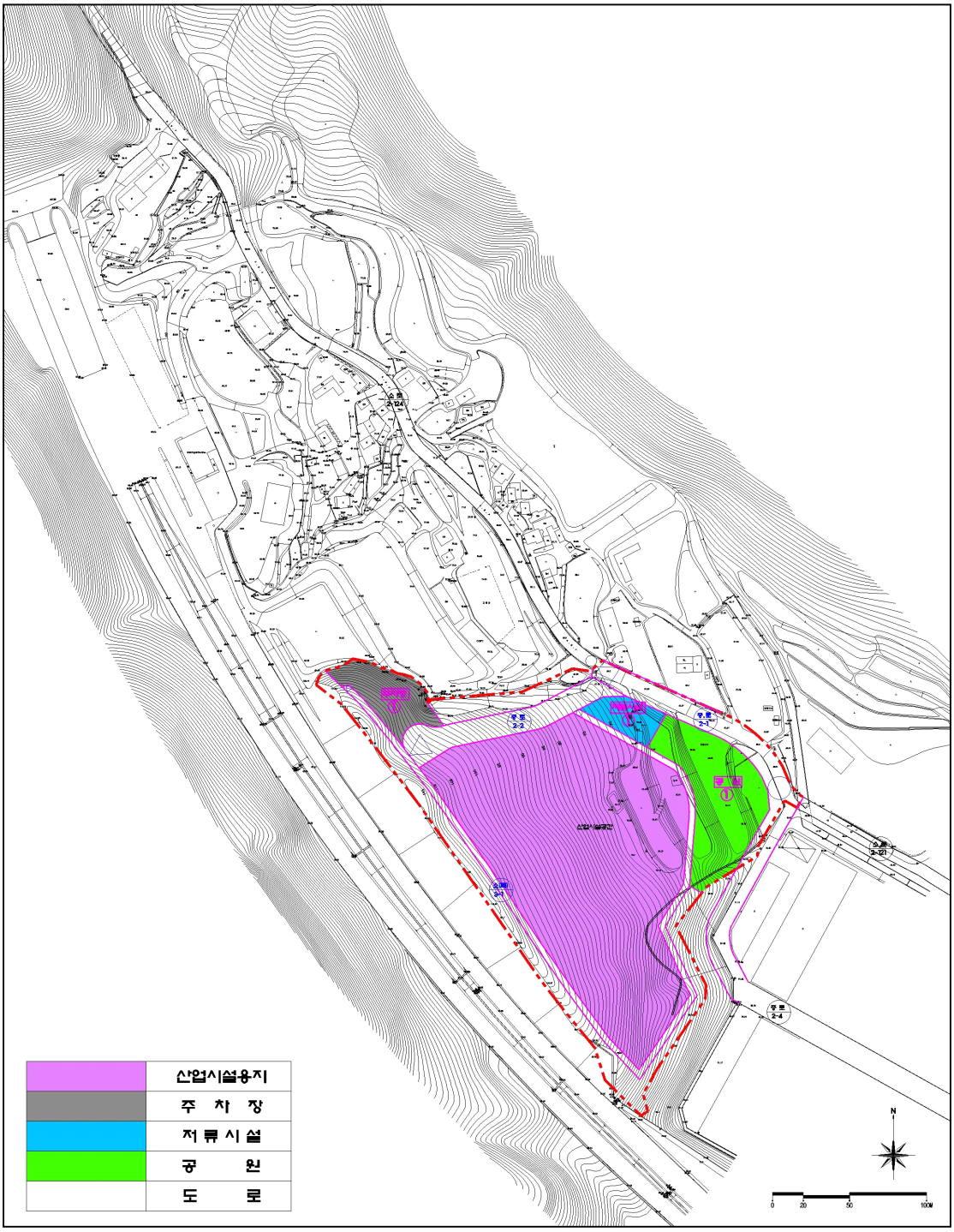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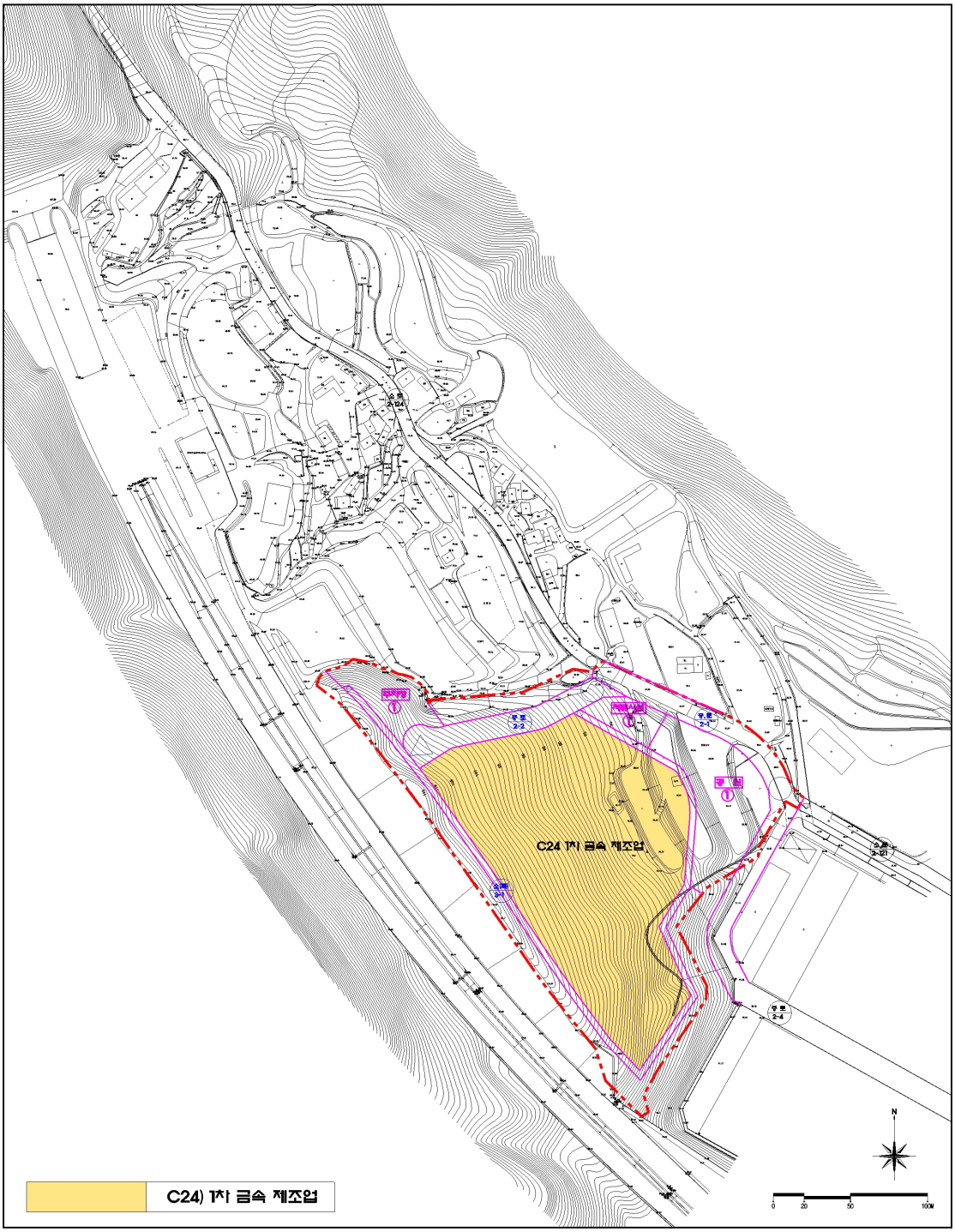
[별첨 2] 업종별 배치계획도